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5-10-27

서 울 행 정 법 원

제 5 부

판 결

사 건 2015구합4204 과태료부과처분취소

원 고 A

피 고 [redacted]시 [redacted]구청장

변 론 종 결 2015. 7. 16.

판 결 선 고 2015. 9. 17.

주 문

1.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원고에게, 2005. 1. 1.부터 2005. 6. 30.까지 기간에 대하여 부과한 자동차세 149,900원, 2005. 7. 1.부터 2005. 12. 31.까지 기간에 대하여 부과한 자동차세 133,680원, 2006. 1. 1.부터 2006. 6. 30.까지 기간에 대하여 부과한 자동차세 180,100원, 2006. 7. 1.부터 2006. 12. 31.까지 기간에 대하여 부과한 자동차세 227,270원, 2007. 1. 1.부터 2007. 6. 30.까지 기간에 대하여 부과한 자동차세 213,900원, 2007. 7. 1.부터 2007.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5-10-27

12. 31.까지 기간에 대하여 부과한 자동차세 213,900원, 2001. 8. 1. 부과한 주민세(개인균등분) 6,300원, 2003. 11. 2. 부과한 주민세(종합소득세분) 118,880원, 2002. 6. 2. 부과한 취득세(자동차) 626,240원, 2004. 3. 2. 부과한 자동차의무보험과태료 300,000원, 2005. 3. 2. 부과한 자동차의무보험과태료 600,000원, 2005. 11. 2. 부과한 자동차의무보험과태료 300,000원, 2008. 10. 2. 부과한 자동차의무보험과태료 1,593,000원, 2006. 10. 2. 부과한 자동차관리법위반과태료 300,000원, 2013. 3. 2. 부과한 자동차관리법위반과태료 397,80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2. 3. 13. 원고 명의로 B NEW EF 소타나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의 신규등록을 하고, 2003. 3. 6. 이 사건 차량의 자동차등록번호를 C로 변경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차량에 관하여 다음 [표1]과 같이 자동차세를 부과하였다.

[표1]

부과연월	부과대상기간	체납금액(원)
2006년 6월	2006. 1. 1. ~ 2006. 6. 30.	180,100
2006년 12월	2006. 7. 1. ~ 2006. 12. 31.	227,270
2007년 6월	2007. 1. 1. ~ 2007. 6. 30.	213,900
2007년 12월	2007. 7. 1. ~ 2007. 12. 31.	213,900
합 계		835,170

다. 한편,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 소유의 차량인 D 자동차에 관하여 다음 [표2]와 같이 자동차세를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차량에 대한 자동차세 부과처분과 합쳐서 '이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5-10-27

사건 각 자동차세 부과처분'이라 한다).

[표2]

부과연월	부과대상기간(부과내역)	체납금액(원)
2005년 7월	2005. 1. 1. ~ 2006. 6. 30.	149,990
2006년 2월	2005. 7. 1. ~ 2005. 12. 31.	133,680
합 계		283,670

라. 피고는 원고에게 다음 [표3] 기재와 같이 지방세 부과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지방세 부과처분'이라 한다).

[표3]

세목	부과연월	부과내역	체납금액(원)	비고
취득세	2002년 6월	이 사건 제1차량의 취득	626,240	
주민세	2001년 8월	주민등록상 세대주	6,300	개인균등할
주민세	2003년 11월	2002사업연도 소득	118,880	종합소득세분
합 계			751,420	

마. 또한 피고는 원고가 원고 소유인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다음과 [표4] 기재와 같이 자동차의무보험과태료 부과처분을 하였고(이하 '이 사건 제1과태료 부과처분'이라 한다), 자동차관리법상의 검사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표5] 기재와 같이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2과태료 부과처분'이라 하고, 이 사건 제1과태료 부과처분과 합쳐서 '이 사건 각 과태료 부과처분'이라 한다).

[표4]

부과연월	의무보험 미가입기간	체납금액(원)	비고
2004년 3월	2003. 9. 27. ~ 2004. 3. 15.(169일)	300,000	대인
2005년 3월	2004. 9. 12. ~ 2005. 3. 15.(183일)	600,000	대인
2005년 11월	2005. 2. 21. ~ 2005. 11. 17.(269일)	300,000	대물
2008년 10월	2008. 3. 6. ~ 2008. 9. 15.(182일)	1,593,000	대인+대물
합계		2,793,000원	

[표5]

부과연월	부과대상	체납금액(원)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5-10-27

2006년 10월	2006. 4. 11.부터 115일 이상 검사미필	300,000
2013년 3월	2008. 4. 12.부터 115일 이상 검사미필	397,800
합 계		697,800

바. 원고는 2015. 3. 23. 위 각 처분에 불복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원고는 소장에서는 '2015. 3. 9.자 자동차세 및 자동차의무보험과태료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으나, 그 이후 청구취지 변경을 통하여 위 각 처분의 취소를 구하고 있다).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2년경 알게 된 소외 E이라는 사람으로부터 부탁을 받고 이 사건 차량의 매수에 있어서 그 명의만을 대여하였을 뿐 이 사건 차량을 본 사실도 없으며, 원고에게는 자동차운전면허도 없다. 따라서 원고에게 이 사건 차량과 관련하여 부과된 각종 처분은 모두 위법하다고 보아야 한다.

또한 원고는 2011. 10. 19.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파산·면책결정을 받았으므로, 위 각 처분으로 인한 체납금액을 납부할 의무가 없다.

나. 관계법령

별지와 같다.

다. 이 사건 소의 적법여부에 대한 판단

1) 이 사건 각 과태료 부과처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8조 제4항,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 제36조부터 제38조에 의하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소정의 의무보험 미가입으로 인한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하여는 해당 행정청(이 사건의 경우 피고)에 이의를 제기하여 관할법원이 과태료의 재판을 하여야 하고, 그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로만 다툴 수 있는바, 이처럼 관계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5-10-27

법령이 과태료 부과처분에 관하여 행정소송이 아닌 간이하고 경제적인 특별구제절차를 마련해 놓고 있는 이상 원고가 행정소송법에 따른 항고소송인 이 사건 소로써 이 사건 제1과태료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은 소 제기의 기타 적법요건에 관하여는 더 따질 필요도 없이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 2011. 9. 8. 선고 2010다48240 판결 등 참조).

한편, 자동차관리법 제43조 제1항 제2호는 자동차 소유자로 하여금 신규등록 후 법정된 기간마다 정기적으로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자동차 검사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고, 자동차관리법 제84조 제3항 제5호는 위 정기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에게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위 과태료 부과처분의 불복에 대해서 별도로 규정을 두지 않고 있다. 그런데, 비송사건절차법 제247조는 '과태료사건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과태료를 부과받을 자의 주소지의 지방법원이 관할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과태료처분의 당부는 최종적으로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절차에 의하여만 판단되어야 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제2과태료 부과처분 역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93. 11. 23. 선고 93누16833 판결, 대법원 1995. 7. 28. 선고 95누2623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 사건 각 과태료 부과처분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아니므로,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각 과태료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다.

2) 이 사건 각 자동차세 부과처분 및 이 사건 지방세 부과처분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은 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고(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본문), 그 제소기간은 불변기간이며(같은 조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5-10-27

제3항), 다만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이를 준수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같은 법 제8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에 의하여 그 사유가 없어진 후 2주일 내에 해태된 제소행위를 추완할 수 있다고 할 것이며, 여기서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란 당사자가 그 소송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하여야할 주의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사유를 말한다.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펴보건대, 원고는 이 사건 각 자동차세 부과처분 및 각 지방세 처분이 이루어지던 무렵 그 각 처분의 고지서를 모두 송달받은 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그 시점에서 원고는 위 각 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위 각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이 지난 후인 2015. 3. 23.에야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고, 원고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불변기간인 제소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다고 볼만한 사정도 없으므로,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각 자동차세 부과처분과 이 사건 각 지방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 부분 역시 부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5-10-27

재판장 판사 김경란

판사 김유정

판사 안좌진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5-10-27

관계법령

▣ 자동차관리법

제43조(자동차검사)
① 자동차 소유자(제1호의 경우에는 신규등록 예정자를 말한다)는 해당 자동차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검사를 받아야 한다.
2. 정기검사: 신규등록 후 일정 기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검사

제84조(과태료)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5. 제43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정기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

▣ 비송사건절차법

제247조(과태료사건의 관할)
과태료사건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과태료를 부과받을 자의 주소지의 지방법원이 관할한다.

제248조(과태료재판의 절차)
① 과태료재판은 이유를 붙인 결정으로써 하여야 한다.
② 법원은 재판을 하기 전에 당사자의 진술을 듣고 검사의 의견을 구하여야 한다.
③ 당사자와 검사는 과태료재판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항고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있다.
④ 과태료재판 절차의 비용은 과태료를 부과하는 선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선고를 받은 자가 부담하고, 그 밖의 경우에는 국고에서 부담한다.
⑤ 항고법원이 당사자의 신청을 인정하는 재판을 한 경우에는 항고절차의 비용 및 전심에서 당사자가 부담하게 된 비용은 국고에서 부담한다.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8조(과태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1조제2항을 위반하여 피해자가 청구한 가불금의 지급을 거부한 보험회사등
2. 제12조제5항을 위반하여 자동차보험진료수가를 교통사고환자(환자의 보호자를 포함한다)에게 청구한 의료기관의 개설자
3. 제2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려는 자와의 계약 체결을 거부한 보험회사등
4. 제25조를 위반하여 의무보험의 계약을 해제하거나 해지한 보험회사등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5-10-27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
2. 제6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통지를 하지 아니한 보험회사등
3. 제13조제1항을 위반하여 입원환자의 외출이나 외박에 관한 사항을 기록·관리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록·관리한 의료기관의 개설자
3의2. 제13조제3항을 위반하여 기록의 열람 청구에 따르지 아니한 자
3의3. 제43조제1항에 따른 검사·보고요구·질문에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아니하거나 이를 방해 또는 기피한 자
4. 제43조제4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이의제기)
①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제17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처분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
③ 당사자는 행정청으로부터 제21조제3항에 따른 통지를 받기 전까지는 행정청에 대하여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철회할 수 있다.

제36조(재판)
① 과태료 재판은 이유를 붙인 결정으로써 한다.
② 결정서의 원본에는 판사가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제20조제1항에 따른 이의제기서 또는 조서에 재판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고 판사가 이에 서명날인함으로써 원본에 갈음할 수 있다.
③ 결정서의 정본과 등본에는 법원사무관등이 기명날인하고, 정본에는 법원인을 찍어야 한다.
④ 제2항의 서명날인은 기명날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37조(결정의 고지)
① 결정은 당사자와 검사에게 고지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
② 결정의 고지는 법원이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다만, 공시송달을 하는 경우에는 「민사소송법」에 따라야 한다.
③ 법원사무관등은 고지의 방법·장소와 연월일을 결정서의 원본에 부기하고 이에 날인하여야 한다.

제38조(항고)
① 당사자와 검사는 과태료 재판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항고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있다.
② 검사는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즉시항고 여부에 대한 행정청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